

의안번호	2216045
의 퇴 인	유동수의원
회 답 일	2026.3.17.
추계번호	26D0191
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(자체감사 및 외부감사)	-경제·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며,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함 -경제·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부터 자체감사의 일부를 위임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함	의무규정
		-경제·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자체감사의 일부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(자체감사 및 외부감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 자체감사 전담조직 설치 등(안 제16조)

- 안 제16조제1항은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와 관련하여서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자체감사 전담조직 운영 예산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

[표 1]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자체감사 전담조직 및 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감사 전담조직	인원 현황	예산		
		주요사업비	경상경비	합계
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	25명	1,756	14	1,770

주1. 2026.3월 기준

주2.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개정 (2020.12.10. 시행)으로 전담조직을 두고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 중에 있음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[표 2]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 감사 인력 및 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감사 부서	인원 현황	예산		
		주요사업비	경상경비	합계
경제·인문사회연구회 감사실	4명	37	23	60

주: 2026.3월 기준

자료: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다만, 2020년 이후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비교해 볼 때,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 또한 감사 업무 확대와 이로 인한 인건비, 사업비 및 경상경비 등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, 개정안이 연구회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자체감사 실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직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며,
- 또한, 개정안은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중 일부를 다시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와 그 소관 연구기관 간에 수행하는 감사 업무의 범위 등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가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